

보호예수약관

제1조 보관대상

- ① 보관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② 은행은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·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제2조 보관물품의 반환

- ① 보관물품을 반환청구할 때는 보호예수증서에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② 거래처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은 자동해지 됩니다.

제3조 계약기간 만료후 재보관

거래처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속 맡기고자 할 때는 은행에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보관물품의 임의처분

- ① 계약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거래처의 보관물품 반환신청 또는 재보관 신청이 없을 때, 은행은 보관물품을 임의로 꺼내어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며, 부득이 처분해야 할때는 은행의 규정에 의한 공매 등물품처리방법에 따라 처분하되, 보다 유리한 가격이 기대될 때는 은행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처분이 곤란한 물품은 은행이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거래처가 내야 합니다.

제5조 이표·배당권 등의 인도 청구

보관물품에 부속된 이표·배당권 등이 있을 경우 거래처는 영수증과 상환하여 이표와 배당권등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보호예수 수수료

-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또는 계약을 다시 할 때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.
- ② 기한 전에 해지할 때는 이미 받은 수수료 중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빼고 잔액을 돌려주며, 기한이지난 후에 해지할 때는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.
- ③ 은행은 수수료 변경 시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약관변경 조항을 따릅니다.

제7조 매매·양도 등의 금지

상속·유증·판결·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보호예수증서를 매매·양도·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8조 면책

보호예수물품의 자연변질로 생긴 손해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제10조 준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보호예수업무 및 구 주택은행의 보호예수업무는 2002.9.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